

노인시설학대 사례 판정서

[illegible]

- ⇒ 동의서, 기록지, 억제 시간 관리 등 관련 서류 관리가 누락됐거나 없고 별도의 해제 시간 기록이 없는 사례도 다수 확인됨. 피해노인 등 입소노인 다수가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대 피해 정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일부 입소노인 중 장시간 신체억제를 한다는 진술이 있었음.

<성적 학대> 피해노인 외 기저귀 교체 등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입소노인

- '노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 ⇒ 현장조사와 , 복수의 . 진술에서 생활실 내 기저귀 교체 및 환복 시 가림막 미사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됨.
- ⇒ 가림막을 설치해도 입소노인을 충분히 가리지 못했으며, 생활실 문이 항상 열린 상태에서 가림막 미사용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됨.
- ⇒ 일부 종사자는 가림막을 사용해야 하는 점은 알고 있으나, 가끔 놓칠 때가 있었고, 가림막이 입소노인을 전부 가리기에는 사이즈가 작다는 진술도 있었으며, 시설 전반에 걸쳐 가림막 미설치 또는 형식적인 사용이 관행화되었다는 진술도 일부 확인됨.

<정서적 학대> 불특정 입소노인

-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

-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

- ⇒ 종사자가 입소노인에게 '주는 대로 먹어라' 등의 모욕적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대다수의 종사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일부 종사자는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조사 시점으로부터 3~4년 전 발생했던 일이라는 진술도 확인됨.
- ⇒ 다수의 종사자는 입소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욕설 또는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일부 직원이 거칠거나 감정적으로 대했다는 진술도 있었음.
- ⇒ 대다수의 종사자는 '목소리가 큰 직원이 있고, 때로는 고성·감정적 언행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일부 진술도 있었음.

<방임 학대> , 입소노인 외 불특정 다수

-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 ⇒ 대다수 종사자는 설사변비·고혈압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간호조무사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병원 진료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진술함.
- ⇒ 입소노인의 경우 설사 지속 및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병원 이송이 지연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건에 대하여 보호자와 소통했던 점과 방문하여 수액을 맞추고 혈액검사를 실시했다는 시설 측의 주장이 일지, 기록지, 기록지와 일치함.
- ⇒ 입소노인은 혈압이 200mmHg 이상 기록된 적이 있었으나, 고혈압 관련 약을 지속 복용 중이었고 응급하게 병원진료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나, 보호자와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기간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고 지속해서 활력징후 등을 확인하며 돌봤다는 다수 종사자의 진술이 일지, 채팅 기록과 일치함.
- ⇒ 바나나, 사과 등 과일이 사들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반복 제공된 사실에 대해, 24년 초 종사자들이 몇 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주요 식사 메뉴가 건더기 없이 제공된 사례도 있었다는 일부 종사자 진술이 있었음.
- ⇒ 수저, 틀니, 콧줄 등 비품의 위생 상태와 관련하여 '식기세척기, 열탕 소독기를 사용한다.'라는 다수 종사자 진술과 달리, 아물질이 남아 있는 식기가 있었다는 일부종사자 진술도 확인되었으며, 현장에서 틀니, 콧줄 등 보장구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판단(결과)

◆ 신체적 학대: 학대로 판정함.

⇒ 시설 측에서는 피해노인을 포함한 입소노인들의 보호자들에게 신체억제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관련기록(기록지,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식사프로그램·기저귀 교체시간 등에는 억제를 해제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조사, 종사자 진술, 등을 통해서보면 에 대한 동의서 일부가 누락된 점, 기록지에서 별도의 해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장시간(10시간~ 24시간 이상) 신체억제가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됨. 따라서 보호자의 동의와 입소노인의 특성상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이 입소노인의 안전, 치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신체억제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기록 관리와 별도의 해제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5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의 신체적 학대 지표 2: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에 해당하여 학대로 판정함.

◆ 성적 학대: 학대로 판정함.

⇒ 현장조사, 열람 및 종사자 진술 등을 통해 생활실 내에서 기저귀 교체 및 환복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입소노인을 가리는 데 목적을 두지 않은 사용으로 보였으며, 가림막이 일자로 퍼지는 형태로 입소노인들을 온전히 가리기 어려웠음이 확인됨. 또한 일부 종사자가 특정 시간에 일시적으로 가림막 미설치 또는 생활실 문을 개방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종사자가 장기간에 걸쳐 가림막 등이 옆에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고 생활실 문을 개방한 채로 기저귀 교체 및 환복 등이 이루어진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이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의 성적 학대 지표 2: '노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에 해당하여 학대로 판정함.

◆ 정서적 학대: 학대로 판정하지 않음.(학대 판단 증거 불충분)

⇒ 신고내용과 같이 입소노인에게 폭언과 욕설 등 모욕적 언행이 있었다는 일부 종사자의 진술이 있었으나, 해당 사건이 조사 시점으로부터 약 3년~4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또한 종사자 중 말투가 거칠거나 입소노인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일부 직원이 있다는 진술도 확인됐으나 다수의 종사자는 직접적으로 입소노인에게 폭언 및 욕설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단정 지을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입소노인 대다수가 인지 저하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학대 판단 증거 불충분으로 시설 측의 학대로 보기 어려움.

◆ 방임 학대: 학대로 판정하지 않음.(학대 판단 증거 불충분)

⇒ 현장조사 및 종사자 상담 등을 통해 조사일로부터 약 1년 전 상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과일, 부실한 식단(국물만 있는 곰탕 등) 등이 제공된 적이 있었다는 일부 종사자의 진술이 확인됐으나, 실제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으며, 오히려 상한 부분은 제외하거나 버렸고 곰탕은 저작 능력이 낮은 입소노인을 위한 식단이었으며, 대파 등은 기호의 차이로 넣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종사자의 진술이 일관됨에 따라 입소노인에게 불량한 과일 등이 제공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관련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시설 측의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시설 측에서 비위생적인 기본물품(틀니, 수저, 식판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종사자 상담 등을 통해 일부 식판이나 수저에 밥풀이 묻거나 한 적은 있었으나, 식기세척기, 열탕 소독기를 사용하여 위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다수 종사자의 진술이 확인되었고 실제 여러 차례 진행된 현장조사 시에도 특별히 문제상황을 발견할 수 없었음. 다만 수저에 죽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묻은 사진 등은 확인되나, 의도적으로 세척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묻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실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해당 사진만을 가지고 시설 측의 학대로 보기 어려움.

⇒ 신고내용과 같이 입소노인이 각각 설사, 혈압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시설 측에서 입소노인의 설사가 지속되어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병원진료의 필요성을 안내

협조사항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남양주시장 귀하